# <국가자격 부정행위 예방 캠페인: '부정행위, 묵인하면 계속됩니다'.>

시험명	2022년 정기 기능사 3회			
수험번호	06201952	시험구분	실기	
종목명	정보처리기능사	선택분야	선택분야없음	
성명	김희망	생년월일	2006년 02월 06일	499
시험일시 및 장소	- 비사 . 6 무단사이프표(무답프 세시시 무사의 1,000%3,000년, 테이프이 약			
합격(예정)자 발표일자	2022년 09월 16일 (금) 09:00 - 인터넷 : <u>http://www.Q-Net.or.kr</u> ARS : 1666-0100 (개별통보 하지 않음)	자격증 신청 방법	큐넷(www.Q-Net.or.kr) - 자격증/확인서발급에서 신청	
검정수수료 환불안내	2022년 07월 11일(월) 10:00 ~ 2022년 07월 14일(목) 23:59 [100% 환불 ] 2022년 07월 15일(금) 00:00 ~ 2022년 08월 09일(화) 23:59 [50% 환불 ] ※ 환불기간 이후에는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			

# 기타사항

◎ 선택과목 : [필답형: 해당없음] ◎ 면제과목 : [필답형: 해당없음] ◎ 편의제공 사항 : 해당없음

(편의제공 사항 요청자는 원서접수기간내에 장애인 수첩 등 관련 **증빙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** 

심사결과에 따라 편의제공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)

# 응시자 유의사항

<(필독) 국가기술자격시험 주요 변경 내역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>

1	.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				
	< 신분증 범위 기준 >				
		인정신분증			
	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		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(장교・부사관・군무원신분증 포함)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		
	해당수험자 한정적용	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만18 세이하인 자	① 초중·고등학교 학생증(※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모두 표기·날인된 것)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		
		미취학아동	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"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"(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) *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수험자는 별지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(지사)로 사전제출(시험당일 발급불가)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		
		사병(군인)	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·날인한 것)		

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

#### 신분증 인정기준

- ① 일체 훼손ㆍ변형\*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\*\*
- \*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・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・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
- \*\*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,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
- ② 사진, 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, 성명, 발급자(직인 등)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・인정
-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

-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·성명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·날인되지 않은 경우
-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초본, 대학학생증, 사원증, 민간자격증, 신용카드, 운전경력증명서 등
-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
- ※ <mark>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분확인은 `22.3.2.(수)부터</mark> 적용되며,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상장형,사진필수)
- ② 카카오,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사진필수)
- ③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
- ④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
- ※ ①, ②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중,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- ※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(통신사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) 인정 불가
- 2. 기능사 등급 공학용계산기는 허용기종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. 그 외 기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 <공학용계산기 허용기종군>

제 조 사	허용기종군			
카시오 (CASIO)	FX-901~999, FX-501~599, FX-301~ 399, FX-80~120			
샤프 (SHARP)	EL-501~599, EL-5100, EL-5230, EL-5250, EL-5500			
유니원 (UNIONE)	UC-600E, UC-400M, UC-800X			
캐논 (Canon)	F-715SG, F-788SG, F-792SGA			
모닝글로리 (MORNING GLORY)	ECS-101			

- ※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(ES, MS, EX 등)은 무관
- ※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
- 3. 시험장에서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전자통신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<시험장 반입금지 전자 • 통신기기 사례>

-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・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테이블릿
- ④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(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, 단순 전자 시계 사용가능)
- ⑤ MP3플레이어 ⑥ 디지털카메라⑦ 카메라펜 ⑧전자사전⑨라디오⑩ 미디어플레이어 등
- 4.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(지워지는 펜, 연필, 유색 필기구 등 사용 불가)
- 5. 가상계좌 입금마감시간 변경(타 결제방법은 전과 동일)

구 분	접수당일 13시까지접수	접수당일 13시 이후 접수
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	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	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
원서접수 마감일	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	사용 불가

# 6. 국가기술자격증 신청·발급방식 변경

자격증 형태	~2021. 4. 27	2021. 4. 28~ (비대면 방식으로 개편)	
상장형 자격증(무료)	○ 인터넷(Q-Net, 정부24) 신청·즉시 발급	< 현행 유지 > * '21.5월부터 상장형 자격증 인터넷 사진변경 신청 가능	
	○ 공단 방문 신청·발급	< 폐지 >	
수첩형 자격증(유료)	○ 인터넷(Q-Net) 신청·공단 방문 수령	< 폐지 >	
	○ 인터넷(Q-Net) 신청·우편배송	< 현행 유지 >	

※ 국가기술자격증 신청·발급 관련 상세 안내는 큐넷(Q-Net) [공지사항] "국가기술자격증 신청 ·발급 변경사항 안내" 참조

☞ 위의 세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큐넷(Q-net)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## <u>(공통사항)</u>

- 1. 국가자격시험 일정 연기 등 중요사항을 공지받기 위하여, 원서접수 시 큐넷 회원정보(휴대전화번호 등)를 반드시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,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기재착오.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4. 시험시간 중 유,무선 인터넷의 연결 및 사용은 일절 금지됩니다.
- 5. 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, 향후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6. 시험장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7. 통신사 PASS앱에서 발급되는 "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"는 신분증으로 인정불가합니다.

#### <u>(필기시험)</u>

- 1.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(컴퓨터 기반 시험)로 시행이 됩니다.
- 2. 수험자는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계산기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.
- 3. 시험시간 중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- 4.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.
- 5. CBT 필기시험은 시험종료 후 즉시 퇴실이 가능합니다.
- 6.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.
- 7. CBT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문제를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.

## (실기시험 - 필답형)

- 1. 수험자는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 검정색 펜(지워지는 펜 제외) (4)계산기[필요시]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 실 완료해야 합니다.
- 2. 시험시간 중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- 3.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.
- 4. 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시간 1/2 경과 후 (단, 시험시작 후 최초 30분 경과 후) 퇴실이 가능합니다.
- 5.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.
- 6. 필답형 시험 답안정정 시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(=)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 후 다시 작성바랍니다.
  - \*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.(단, 인적사항을 제외한 "답안란"만 수정가능)
- 7. 필답형 실기시험 시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, 그 외 연필 류, 적색, 청색 등 유색필기구,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8.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

## (실기시험 - 작업형)

- 1. 수험자는 (1)수험표 (2)신분증(모델 동반시 모델 포함), 시험에 필요한 공구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.
- 2. 시험시간 중 지참공구를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- 3.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
- 4. 실기시험 일부 종목의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문제지(도면 포함)를 가지고 가거나, 카메라 등으 로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.
- 5. 작업형 실기시험 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료는, 시험종료 후 수험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.
- 6. 미용사 종목 모델은 수험자와 동일하게 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시험시작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 하지 않은 경우 모델로 시험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- 7. 중장비운전 종목은 응시 전 음주상태를 측정하며, 음주측정 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 알콜농도 0.03% 이상 으로 나온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

\* 본 수험표를 지참한 후 검정당일 감독위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
시험장소약도보기

수험표 출력